

---

문서번호 : 18-04-국제통상-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담당: 장보람 변호사:010-9337-3607)  
제 목 : [보도자료] 법무부의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답변  
전송일자 : 2018. 04. 26. (목)  
전송매수 : 첨부 포함 총 5매

---

##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2018. 4. 10. (금)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문 공개 입장에 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3.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되어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2018. 4. 24. (화) 법무부 국제법무과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내외 관련 법령, 향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선고 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판정문을 포함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답변해 왔습니다(국제통상위원회의 질의서와 법무부의 답변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국가재정에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ISDS 대응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정석윤 (직인생략)

## [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LSF-KEB Holdings SCA 외 7명(이하 ‘론스타’)이 2012. 12. ICSID에 제기한 ISDS(ICSID Case No. ARB/12/37, 이하 ‘론스타 ISDS 사건’이라 합니다.)는 국제기구의 공식적 중재판정에 이른 최초의 ISDS 사례로서, 론스타측에서 5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ISDS 제도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론스타가 2012. 12.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 아널드 앤 포터(Arnold & Porter), 법무법인 태평양(Bae, Kim & Lee)을 선임하여 ICSID 중재 심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 6.2.~3. 최종심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론스타 ISDS 사건에서 ICSID 중재판정부(tribunal)는 판정(award)에 이르렀으며 판정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질의드리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 정부는 ICSID가 중재판정문(award)을 공개(publish)하는 것에 동의(consent)하였거나 동의할 방침입니까?
- 2) 만약 론스타 측에서 중재판정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응 방침은 무엇입니까? 대응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방침을 정할 것입니까?
- 3) ICSID가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계획입니까?

6.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이번 론스타 ISDS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이자, 사법주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막대한 국가재정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공익적 관점에서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문이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입장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첨부 2. 법무부 국제법무과 국민신문고 답변]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1804-110666)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내외 관련 법령, 향후 취소소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 선고 후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판정문을 포함한 정보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다만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관계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국제법무과 김수진 사무관 (02- 2110-4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